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에 설치한 한시조직 중 신공항기획과는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고, 공항건설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(4급 또는 5급 1명, 6급 1명)의 존속기한을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토교통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등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⑫ 공항건설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.

별표 5 중 국토교통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“제58조의2제4항 및 제58조의3제4항”을 “제58조의3제4항”으로 하고, 제1호를 삭제한다.

별표 5의2를 삭제한다.

별표 6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59조제12항 관련 한시정원(존속기한: 2024년 6월 30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4급 또는 5급 이하	2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58조의2(신공항기획과) ①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공항기획과를 둔다.</u> <u>② 신공항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되,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.</u> <u>③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</u> <u>1. 공항건설 제도의 입안 및 연구·발전</u> <u>2. 신공항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u> <u>3.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 <u>4. 신공항 접근교통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 <u>5.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조정, 재원조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</u> <u>6. 신공항 개발사업의 기관 간 사업비 분담에 관한 사항</u>	<u><삭 제></u>

<u>7. 신공항 개발사업 관련 관계 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</u> <u>8. 신공항 주변지역의 자유무역 지역 지정 요청 등에 관한 사항</u> <u>9. 신규 비행장 개발의 타당성 조사 및 입지선정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 <u>10. 신공항 및 신규 비행장 개발 사업의 사업관리 총괄·조정</u> <u>에 관한 사항</u> <u>④ 신공항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.</u> <u>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u> 제59조(한시정원) ①·② 삭제 ③ ~ ⑪ (생략) <u><신설></u>	제59조(한시정원) ③ ~ ⑪ (현행과 같음) <u>⑫ 공항건설 업무 추진 등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토교통부에 둔다.</u>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8